



제 427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사청문 대상 확대, 인사청문회 분리 실시 등〉

■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1408호, 제2211410호)

2025. 7.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 제안이유 · 주요내용	1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
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
II . 검토의견	5
1. 인사청문 대상 확대	5
2. 공직윤리청문회 및 공직역량청문회 분리 실시	15
3. 인사청문 관련 기간 연장	17
4. 위원 질의시간에 공직후보자 답변시간 제외	20
5.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비공개열람 근거 마련	22
6. 부 칙	26
※ 참고자료	27

I. 제안경위 · 제안이유 · 주요내용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발 의 자 : 허 영 · 박용갑 · 이기현 · 김기표 · 김동아 · 이성윤
최혁진 · 위성곤 · 문진석 · 이병진 · 박상혁 · 전진숙
문금주 의원(13인)
 - 2) 제 안 일 : 2025. 7. 10.
 - 3) 회 부 일 : 2025. 7. 11.
- ※ 의안번호 : 1140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인사청문 절차를 적용하고 있어 막대한 권한과 공적 영향력을 가진 일부 직위는 인사청문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교육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포함하여 교육, 인권, 군사 등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운영의 핵심에 해당하는 분야의 주요 인사에 대한 면밀한 검증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5조의2).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11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07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10호) 및 박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허 영 · 박용갑 · 이기현 · 김기표 · 김동아 · 이성운
최혁진 · 위성곤 · 문진석 · 박상혁 · 이병진 · 전진숙
문금주 의원(13인)

2) 제 안 일 : 2025. 7. 10.

3) 회 부 일 : 2025. 7. 11.

※ 의안번호 : 1141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위공직자 임명에 있어 국회의 검증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임. 하지만 청문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실질적 검증보다 신상털이나 정치공세에 집중되는 경향이 컸음.

이에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이원화하여 사생활이나 가족 문제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한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고 동시에 정책 및 전문성 검증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자 함.

또한, 국회의 청문 기한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청문회 개최 기간도 3일에서 5일로 확대하여 충분한 검증 시간과 자료 분석이 보다 면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인권 및 사생활 침해가 우려돼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비공개 열람 제도를 신설하고 비공개 열람

후 위원회의 재요구 시 자료를 제출한 공무원은 법적 책임을 면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자료 확보를 도모함.

끝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 주요 헌법기관 및 독립기관에 대한 청문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적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직에 대한 감증을 강화하는 등 인사청문회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조 등).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11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07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08호) 및 박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검토의견

1. 인사청문 대상 확대

개정안은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여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②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추가하려는 것임(「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5조의2제2항,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제1호 및 제6조제3항).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 (생략)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u>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u>,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u>합동참모의장</u>, 한국은행 총재,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 ----- -----<u>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u>----- -- <u>합동참모의장, 국가인권위원회</u>

현행	개정안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2.·3. (생략) <u><신설></u> ③ ~ ⑥ (생략)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직후보자”라 함은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을 위하여 동의요청된 자, 선출을 위하여 추천된 자,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국무총리후보자로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와 동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u>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u>으로부터 국회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를 말한다. 2. (생략)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 (생략) ③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국가정보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u>국가인권위원회</u>	<u>상임위원</u>----- ----- 2.·3. (현행과 같음) 4. <u>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후보자</u>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 -----. 1. ----- ----- ----- ----- ----- <u>대통령·대통령당선인·대법원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u>----- -----. 2. (현행과 같음)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 (현행과 같음) ③----- ----- ----- ----- ----- -----<u>국가교육위원회</u>

현행	개정안
<u>위원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국세청장 · 검찰총장 · 경찰청장 · 합동참모의장 · 한국은행 총재 ·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이하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이라 한다)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 · 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u> ④ (생략)	<u>위원장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국세청장 · 검찰총장 · 경찰청장 · 합동참모의장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u>----- ----- ----- -----<u>대통령 · 대통령당선인 · 대법원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u>----- ----- ----- -----. ④ (현행과 같음)

현재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은 총 67인으로, 국회 동의를 받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직위(23인)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그 밖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직위(44인)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있음.

[표-2] 인사청문 실시 대상 현황

실시주체	대상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23인)	국회 동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13인)	국회 선출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
소관 상임위원회 (44인)	대통령 임명 국무위원(19인),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앙선거 관리위원 3인, 방송통신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 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

먼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및 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22년에 설립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임.

[표-3] 국가교육위원회 직무 및 구성

구 분	주 요 내 용
설치목적	◦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하여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
직무	◦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 국가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 고시 ◦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위원회 구성	◦ 상임위원 3인(위원장 1인 포함)을 포함한 21인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은 아래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위촉 － 국회 추천 9인(상임위원 2인 포함). 1인은 비교섭단체 추천 － 대통령 지명 5인(상임위원 1인 포함) － 교육부차관

구 분	주 요 내 용
	- 교육감 협의체 대표자 - 교원 관련 단체 추천 2인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인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인 -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1인
위원장 선출	◦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관련 조문을 정리하여 작성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장관급¹⁾)으로서 임기는 3년이며(한 차례 연임 가능), 위원회를 대표하고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발언하거나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음.²⁾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는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초정권적 독립기구로 출범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장 후보자의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됨.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으로 추가할지는 동 위원회의 성격 및 직무, 위원장의 위상과 국정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1)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별표 1] 국가교육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에 따르면 위원장은 장관급임.

2)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위원장을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상임위원 및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

참고로, 국가교육위원회는 ①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직접적인 의안제출권이 있는 국무위원 기관이 아닌 점, ② 동 위원회 위원은 국회, 정부, 교육관련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임명되므로 구조적으로 내부적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③ 동 위원회의 기능이 국가 교육정책의 거시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³⁾

다음으로,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 등의 조사 및 개선 권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인권교육 및 홍보, 인권 관련 단체·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위하여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구로서의 성격을 지님.⁴⁾

[표-4] 국가인권위원회 직무 및 구성

구 분	주 요 내 용
설치목적	◦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의 보호·향상
직무	◦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조사·연구 및 개선 권고·의견 표명 ◦ 인권침해행위,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 인권교육 및 홍보 ◦ 인권침해 유형, 판단기준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 제시·권고

3) 국가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는 소수의견도 존재한다는 설명임.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구 분	주 요 내 용
	◦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조약 이행에 관한 연구·권고·의견표명 ◦ 인권 관련 단체·개인·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협력 등
위원회 구성	◦ 위원장 1인 및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한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 ◦ 인권위원은 아래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 - 국회 선출 4인(상임위원 2인 포함) - 대통령 지명 4인(상임위원 1인 포함) - 대법원장 지명 3인
위원장 선출	◦ 인권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함

자료: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관련 조문을 정리하여 작성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국회 선출 또는 대통령 지명을 통하여 임명하는 정무직공무원(차관급⁵⁾)으로,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직무를 수행함.⁶⁾ 특히,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은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함.⁷⁾

개정안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에게 군인권보호관이라는 추가적인 책무가 부여되고 군인권보호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한 것은 군인권침해 사건 조사의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인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상임위원 후보자의 인권의식, 중립성 및 자질을 검증하여 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을 국회 인사청문대상에 포함할지 여부

5)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차관급 임.

6)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2조(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침해구제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등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는 심의 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성·장애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과 전문위원의 자격·임기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7)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2(군인권보호관) 군인권보호관은 제5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과 지위, 군인권보호관의 역할 및 국정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

참고로, 현재 합의제 기구인 위원회의 경우 ① 위원 전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거나(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② 위원장에 대해서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⁸⁾

마지막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근거하여 선거·국민투표의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기관으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기구(사무처,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두고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의 장으로서 정무직 공무원(장관급⁹⁾)에 해당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사·예산 등 행정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함.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동일한 장관급이고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

8) 현행법상 위원장과 위원 중 1인에 대해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사례는 없음.

9)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별표 1]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에 따르면 위원장은 국무위원급(장관급)임.

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이해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 직위로 추가할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특수성, 사무총장의 위상과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¹⁰⁾

다만, 현행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이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경우 사무기구의 장에 대하여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도 위원장만 국회 인사청문 대상으로 규정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표-5] 위원회 사무기구의 장에 대한 임명 절차

구 분	기관명	사무기구의 장 임명 절차	국회 인사청문 대상
헌법기관	국회	본회의 승인을 받아 국회의장이 임명	-
	법원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임명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독립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10) 동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4항도 함께 개정하여 법정기간이 도과한 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제10조제2항도 함께 개정하여 의장이 인사청문결과보고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도 송부할 수 있도록 체계·자구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인사청문회법**」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결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등으로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구 분	기관명	사무기구의 장 임명 절차	국회 인사청문 대상
행정 기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용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임용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임용	금융위원회 위원장

참고로, 개정안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으로 포함할지 여부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인사청문 일정이 지체될 경우 선거관리 업무 공백의 장기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추가적으로, 「국회법」제65조의2제2항¹¹⁾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인사청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근거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외에 개별법에도 두어야 하므로, 동 개정안에 대한 심사 시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11호) 및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07호)」의 심사상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¹²⁾

11) 「국회법」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12) 대통령 지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인사청문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49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51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50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53호 및 제7955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54호 및 제7957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69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70호)이 현재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동 개정안 심사 시 이들 개정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2. 공직윤리청문회 및 공직역량청문회 분리 실시

개정안은 공직후보자의 청렴성,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공직윤리청문회’와 전문성, 정책역량 검증을 위한 ‘공직역량청문회’를 분리하여 실시하되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14조).

[표-6]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① (생략) <u><신설></u>	제4조(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청렴성, 도덕성 등의 검증을 위한 공직윤리청문회와 전문성, 정책역량 등의 검증을 위한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생략)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5. (생략) <u><신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4조(공직역량청문회의 공개와 공직윤리청문회의 비공개) ① 공직역량청문회는 공개한다. ----- -----. 1. ~ 5. (현행과 같음) ② 공직윤리청문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의 업무능력과 도덕성 등을 국회에서 검증하여 직위에 적합한 인사를 임명하도록 하여 공직후보자 임명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나, 인사청문회가 개인신상에 관한 과도한 의혹 제기, 도덕성 검증 중심 진행으로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에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개정안은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공직후보자의 사생활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시키는 범위에서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윤리성과 업무능력 양 측면에서 각각 충실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내실있는 인사청문회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에 대하여 공직후보자의 윤리성 검증과 업무능력 검증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인사청문을 분리하여 실시할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 같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2회에 걸친 인사청문 실시로 인한 인사청문 일정 지연이나 공직후보자의 부담 등에 대한 의견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청문회의 분리 실시 여부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하게 공직윤리청문회 및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3호)이 현재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동 개정안 심사 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3. 인사청문 관련 기간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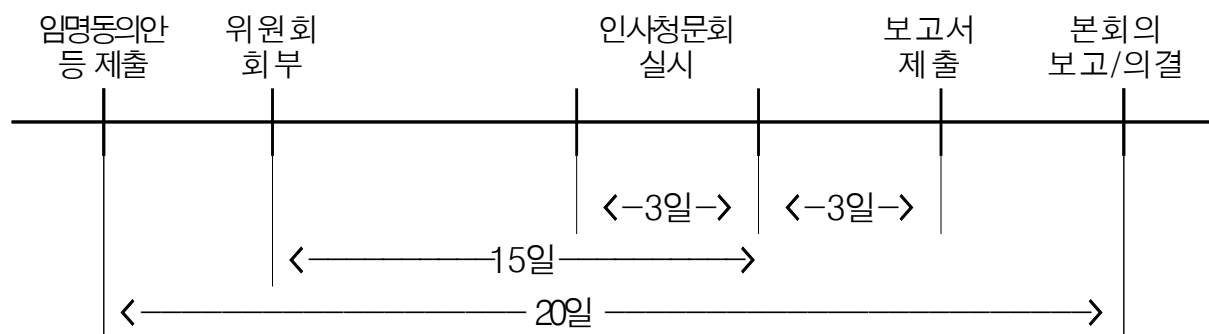
개정안은 인사청문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인사청문회 실시 기한을 안건이 회부된 지 ‘15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인사청문회 실시기간을 현행 ‘3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각각 연장하여, 인사청문회 분리 실시에 맞추어 인사청문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6조 및 제9조).

[표-7]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②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u>20일</u>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②----- ----- <u>30일</u> ----- -----.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①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u>15일</u>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u>3일</u>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①----- ----- <u>20일</u> ----- ----- ----- <u>5일</u> 이내-----.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지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고,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함. 또한,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결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그림-1] 현행 인사청문기간



이에 따르면 청문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여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은 실질적으로 열흘 남짓에 불과하므로,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할 준비기간이 부족하여 현실적으로 공직후보자 검증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참고로, 제20대 국회에서는 총 97건의 임명동의안등 중 58건(59.8%)이, 제21대 국회에서는 총 104건의 임명동의안등 중 65건(62.5%)이 인사청문에 20일 이상 소요되었음. 또한, 2025년 7월 기준 제22대 국회에 제출된 41건의 임명동의안등 중 22건(53.6%)이 인사청문기간 20일을 초과하였음.

[표-8] 제20대~제22대국회 인사청문기간 사례 (2025. 7. 23. 기준)

구 분	실시위원회	전 체	20일 경과 건수	비 율
제20대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1건	19건	90.5%
	상임위원회	76건	39건	51.3%
	소계	97건	58건	59.8%
제21대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18건	14건	77.8%
	상임위원회	86건	51건	59.3%
	소계	104건	65건	62.5%
제22대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9건	4건	44.4%
	상임위원회	32건	18건	56.2%
	소계	41건	22건	53.6%

개정안은 인사청문기간을 연장하여 국회와 공직후보자 모두 청문회 준비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고 심도 있는 검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사청문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과 같이 인사청문기간이 늘어날 경우에는 공직후보자 임명이 지연되는 측면도 있으므로, 인사청문기간 연장으로 인한 인사청문의 실효성 증진과 공직후보자 임명 지연으로 인한 중요 정책결정사항의 지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¹³⁾

13)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하게 인사청문 관련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3호)이 현재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동 개정안 심사 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4. 위원 질의시간에 공직후보자 답변시간 제외

개정안은 위원 1인당 질의시간에 공직후보자의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표-9]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위원의 질의등) ①·② (생략)	제7조(위원의 질의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후단 신설>	③----- ----- 이 경우 질의시간에 공직후보자의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현행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一問一答)의 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위원 1인당 질의시간에 답변시간이 포함되는 반면,¹⁴⁾ 본회의 대정부질문과 긴급현안질문의 경우에는 의원의 질문시간에서 답변시간이 제외됨.¹⁵⁾

개정안은 인사청문회의 경우 본회의 대정부질문과 긴급현안질문과 같이 질의시간에 공직후보자의 답변시간을 산입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

14) 「국회법」 제60조(위원의 발언) ②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一問一答)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 제7조(위원의 질의등) ③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위원회에서의 질의는 1문1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15) 「국회법」 제122조의2(정부에 대한 질문) ② 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긴급현안질문) ⑦ 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122조의2를 준용한다.

으로, 위원의 질의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기여하고 공직후보자의 답변에 따라 위원들의 실제 질의시간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본회의¹⁶⁾와 달리 위원회¹⁷⁾는 같은 의제에 대한 위원의 발언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로운 질의·토론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¹⁸⁾ 개정안과 같이 질의시간에서 답변시간을 제외하는 경우 회의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회의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¹⁹⁾

16) 「국회법」 제122조의2(정부에 대한 질문) ② 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의제별 질문 의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22조의3(긴급현안질문) ⑤ 긴급현안질문 시간은 총 120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긴급현안질문을 할 때 의원의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⑦ 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122조의2를 준용한다.

17) 「국회법」 제60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議題)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발언을 원하는 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15분의 범위에서 각 위원의 첫 번째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18)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24, p.297

19)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하게 위원 질의시간에 공직후보자의 답변시간을 제외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99호)이 현재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동 개정안 심사 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5.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비공개열람 근거 마련

개정안은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해당 자료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이 있는 경우 비공개열람을 요구하고 위원회 승인에 따라 비공개열람하되,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 의결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비공개열람 후 위원회로부터 자료제출요구를 받아 자료를 제출한 공무원에 대한 다른 법률에 의한 책임을 면제하고, 인사청문위원·보좌기관·국회공무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외부 유출 또는 공개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제출된 인사청문 관련 자료를 두텁게 보호하여 국회의 자료제출요구의 실효성과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의 보호의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표-10]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 ~ ④ (생략)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설>	<u>⑤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기타 기관은 해당 자료가 사생활침해 등의 우려나 그 밖의 사유로 제출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인사청문위원들이 비공개로 열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가 있으면 위원회의</u>

현행	개정안
<신설>	승인에 따라 이를 비공개열람하고,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결로 다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⑥ 비공개열람후 위원회로부터 다시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공무원이 이를 국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설>	⑦ 인사청문위원, 그 보좌기관 및 국회공무원은 제출받은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외부로 유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⑧ 자료제출요구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현행 「인사청문회법」 제12조20)에 따르면, 위원회는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해당 기관에 대하여 경고할 수 있음.

- 20) 「인사청문회법」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기관에 이를 경고할 수 있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충실한 검증을 위해서는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사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구속력 있는 제재규정도 마련되지 못하여 인사청문회를 내실 있게 진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개정안은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제출 기관의 비공개열람 요구와 함께 위원회가 비공개열람 후 그 적정성 및 자료제출요구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제출된 자료의 무단 외부 유출 또는 공개를 금지함으로써,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개정안은 제12조제7항에서 인사청문위원, 보좌기관 및 국회공무원의 무단 외부 유출 또는 공개 금지에 관한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제18조에서 위원 및 사무보조자의 비밀 누설 금지에 관한 주의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8조에서 주의의무를 함께 규율하는 한편, 주의의무의 주체도 현행 「인사청문회법」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위원 및 사무보조자’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²¹⁾

21) 「인사청문회법」 제18조(주의의무) ①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주의의무) ①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둘째, 개정안 제12조제8항은 자료제출요구와 관련하여 국회관계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관계법을 준용하는 사항이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것임을 특정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현행 「인사청문회법」 제19조²²⁾는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한 국회관계법의 포괄적·일반적인 준용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준용규정을 별도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²³⁾

22) 「인사청문회법」 제19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회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 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23)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하게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비공개열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3호)이 현재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동 개정안 심사 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6. 부 칙

개정안(「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표-11] 개정안 부칙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인사청문 대상, 인사청문회의 분리 실시, 인간청문기간의 연장,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비공개열람 등의 사항에 관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항 또는 이 법 시행 후에 발생하는 사항부터 적용할 것인지 그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적용례를 두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17



도입시기	법적근거	대 상 자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2000. 2. 16.) 「인사청문회법」 제정(2000. 6. 23.)	-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임명동의안) -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회선출)
제16대국회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2003. 2. 4.)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정(2003. 2. 4.) ※ 「국회법」 부칙에서 개별 법률 개정	- 국무총리(대통령당선인지명) -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제17대국회	「국회법」 개정(2005. 7. 28.) 「인사청문회법」 개정(2005. 7. 29.) ※ 「국회법」 부칙에서 개별 법률 개정 「헌법재판소법」 개정(2005. 7. 29.)	- 국무위원(대통령임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대통령임명, 대법원장지명)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2007. 12. 14.) ※ 「국회법」 부칙에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2005. 7. 28.)	- 국무위원(대통령당선인지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2006. 12. 28.) 「국회법」 개정(2006. 12. 30.) 「인사청문회법」 개정(2007. 12. 14.)	- 합동참모의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08. 2. 29.)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에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제18대국회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2012. 3.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한국은행법」 개정(2012. 3. 21.)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제19대국회	「특별감찰관법」 제정(2014. 3. 18.) ※ 「특별감찰관법」 부칙에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	- 특별감찰관
	「방송법」 개정(2014. 5. 28.)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	- 한국방송공사 사장
제21대국회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2020. 8. 1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20. 1. 14.)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정부조직법」 개정(2023. 3. 4.) ※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	- 국무위원(국가보훈부장관)